

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운영 규정 일부 개정(안)

1. 개정취지

: 학생설계전공은 기존 전공과목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 이를 고려하여 심의주체 변경

2. 개정 주요 내용

: 학생설계전공 신설 및 운영 관련 사안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함.
(연계·융합전공운영위원회는 연계·융합전공 관련 사안을 심의함)

3. 시행일: 승인일

4. 추진일정

- ①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의견수렴: 사전보고 이후 4일
- ② 규정심의위원회 심의
- ③ 개정 안 확정 보고 및 공포

붙임: 1. 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운영규정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2. 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운영규정 개정(안) 전문 1부. 끝.

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운영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 15조(신청자격 및 절차) 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<u>연계·융합전공운영위원회</u>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 15조(신청자격 및 절차) ① <좌동></p> <p>②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<u>교육과정위원회</u>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
	<p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p>

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운영규정 개정(안)

<극동규정 제221호> <시행일 2021.00.00.>

제 정 2020.03.11.
개 정 2020.08.24.
개 정 2021.00.00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운영규정은 「학칙」 제32조 제4항에 따라 연계·융합·학생설계전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연계전공: 둘 이상의 학과가 상호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
2. 융합전공: 둘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전공
3. 학생설계전공: 학생이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최소 3개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수하는 전공

제2장 연계·융합전공

제3조(연계·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) ① 연계·융합전공의 신설은 참여 학과 소속 전임교원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하며, [별지 1] 내지 [별지 3]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연계·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 연계·융합전공 신청자가 제6조 제4항의 최소 선발인원에 2년 연속 미달될 경우에는 해당 연계·융합전공의 신규 모집은 중단하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학기까지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제4조(주임교수) ① 주임교수는 참여학과 소속 교수들의 협의를 통하여 선출한다.

② 주임교수는 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, 전공지도 등 융합전공에 관한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.

제5조(연계·융합전공운영위원회) ① 연계·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와 참여 학과의 교원으로 구성된 연계·융합전공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로 하고, 위원은 참여 학과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단,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 및 연계·융합전공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맞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2. 교과목 변경(폐지, 신설 포함)에 관한 사항
3. 학년별, 학기별 교과목 배정에 관한 사항
4.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5. 재학생·졸업생 및 산업체의 요구사항의 반영에 관한 사항
6. 해당 전공 이수자에 대한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

제6조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) ① 연계전공은 참여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·운영되는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편성하고, 융합전공은 참여학과의 교육과정표에 편성·운영되는 교과목과 융합전공에 필요한 새로운 교과목으로 36학점 이상 편성한다.

② 융합전공에 필요한 신규 교과목은 본교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강사,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8.24.>

③ 연계·융합전공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④ 연계·융합전공의 선발인원은 최소 15명으로 한다. 다만, 교육여건 및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이수 및 학점인정) ① 연계·융합전공자는 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

② 연계·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연계·융합전공에서 편성·운영하는 교과목을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연계·융합전공 이수신청 전에 미리 이수한 교과목은 연계·융합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소속학과(전공)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·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교차 인정의 범위는 최대 9학점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0.08.24.>

⑤ 연계·융합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며 졸업사정은 위원회에서 시행한다.

제8조(신청자격 및 절차) ① 연계·융합전공 지원자격은 2학기를 마친 학생으로서 2학년 1학기부터 정해진 기간에 이수신청서 [별지 5]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융합전공을 지원하는 학생은 참여학과와 관계없이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(포기 및 변경) ① 연계·융합전공을 포기하려는 학생은 융합전공 이수 포기신청서 [별지 6]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계·융합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취득 교과목의 학점은 소속 학과 심의를 거쳐 전공 또는 일반 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학위수여) ① 연계·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는 [별표 1]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2조(학칙준용) 이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학칙」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장 학생설계전공

제13조(학생설계전공 편성) ①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 시 교육과정 편성은 전공의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54학점으로 한다. 단, 교과목 구성시 개론 과목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.

② 교과목은 전공선택 교과목으로만 편성하고, 실험·실습 교과목 편성은 제외한다.

제14조(이수 및 학점인정) ① 학생설계전공자는 주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학생설계전공 이수신청 전에 미리 이수한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소속학과(전공)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자기설계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교차 인정의 범위는 최대 9학점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0.08.24.>

⑤ 학생설계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학점을 「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이수표」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

⑥ 학생설계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며 졸업사정은 소속학자가 시행한다.

제15조(신청자격 및 절차) 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.

②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[교육과정위원회](#)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00.00.>

제16조(포기 및 변경) ①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취득 교과목의 학점은 소속 학과 심의를 거쳐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7조(학위수여) 주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[별표 1]의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8조(지도교수) 학생설계전공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관리와 운영을 위한 지도는 주전공의 지도교수가 담당한다.

제4장 기 타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수요건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규정 제7조, 제14조의 이수요건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